

2021년 상담사 채용 공고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1년 신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본 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할 계획이오니 관심 있는 분은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년 3월 2일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지원 인력 (계약직)	1명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장애 위험 영유아 선별 및 치료연계 -교사 및 부모대상 교육, 상담, 정보제공 -그 외 센터 업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석사 과정 관련 3과목 이상 수료, 관련학과 졸업자 등 -상담심리사 또는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에 준 하는 자 등 (보육교사 경력자, 유아특수교육전공자 우대) -관련학과: 심리, 상담, 특수교육 등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1. 3. 3. (수) ~ 3.17. (수) 17:00까지	-마감일 도착시간 까지 유효함.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3. 18. (목) 17:00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3. 22. (월) 14:00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3. 23. (화) 17:00	

-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 최종합격은 채용 신체검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최종 확정됨
- ※ 채용인원 중 결원발생 시 고득점순으로 충원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처

- ① 입사지원서-사진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양식)
- ② 자기소개서 (첨부양식)
-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첨부양식)
-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⑤ 자격증 사본
- ⑥ 경력증명서 (전체 경력 삭제 없이 준비)

※ 제출서류 중 ①,②,③ 서류는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제출
※이메일 : yeojucare@naver.com 이메일 제목을 '상담사 지원-이름'으로 기재할 것

<채용 후 추가 제출 서류>

- ①통장사본 ②주민등록등본 ③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④공무원 신체 채용검사서 ⑤건강진단 결과서(구보건강증) ⑥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⑦반명함판 사진 1장

4

근로조건 및 보수기준

구 분	내 용
채용형태	-사업기간 내 계약직 -2021. 4. 19. ~ 2021. 12. 31 ※ 사업 지속 운영시 업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 종료시 계약이 종료됨
보수기준	-급여: 2021년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수 기준에 준함.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근무시간	-일 8시간 (09:00~18:00) 40시간 근무
근무개시일	-2021. 4. 1. (목)

5

기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하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 2년(제48조제 1항제 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문의)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883-2019